

중재 판정 사례 ①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I.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

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수령 및 선급금, 기성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①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공사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품 목	준용도로 개설공사	
신청금액	1,749,449,581원	중재비용: 14,411,972원
신청일	2003. 1. 24.	
판정일	2003. 10. 13.	
처리기간	263일	
판정금액	497,833,486원	

A는 B로부터 2001. 4. 18. ○○시 ◎◎읍 소재에 건설하는 “◇◇지구 폭 25m 연장 1.27km(그 후 설계 변경 되어 903m로 축소됨)준용도로 개설공사”를 총 공사대금 48억원(부가가치세 4억 8000만원 별도), 공사기간은 2001. 4월부터 2002. 6. 30.까지, 공사연체 보상금률은 연체일수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 비율로 하기로 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는 바, 공사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연장길이가 903m로 축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했던 공사물량이 감소되거나 제외된 부분이 있고, 반면에 공사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항목의 공사가 추가된 부분이 생겼으며, A는 2002. 8. 31. 자로 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B에게 인도 하였다.

A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수령액과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급주장을 하였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 하였다.

공사비 산정은 원래 A와 B 간의 합의로 확정해야 할 사항이었으나 A의 협의 불응으로 할 수 없이 발주자가 위 용역기술단에 그 수량 및 신규항목에 대한 적정한 단가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동 기술단은 제공된 위 감리인이 감리한 위 수량산출서 등 자료 등으로 이를 산출하였으니 결국 이 건 총 공사비는 위 산출된 수량에 기존항목의 단가가 있는 것은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항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2호에 따라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낙찰률인 70.5%를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이 사건의 총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물량 및 신규항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단가가 100%와 위 낙찰률인 70.5%의 중간인 85.25%로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B의 선급금 지급의무의 변제기는 A가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 날이라 할 것이고, B의 기성금 지급의무의 변제기는 A가 기성분에 관하여 검사요청 후 검사가 끝난 후 20일 이내라 할 것이며, 위 선급금과 기성금의 불지급시는 B가 각 그 익일 이후부터 상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2.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

①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	
품 목	역사단지 조성공사	
신청금액	443,303,011원	중재비용: 5,418,166원
신청일	2003. 1. 22.	
판정일	2003. 12. 23.	
처리기간	335일	
판정금액	88,908,165원	

B는 발주자로부터 ○○역사 재현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동도급 받은 건설회사들 이고 A는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 회사이다.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공사잔대금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는 A의 의무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들이 합의된 완공기일에 종료되지 못하였으므로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을 뿐 공사금의 정산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반박했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공기연장이 발주자 및 B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나 A도 현장관리 인원을 최소화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중도합의 된 금액의 70%만 인정하였다. 또한 선금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A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라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인데 이에 대하여는 내역을 정확히 밝혀 B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A가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3. 공시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의 적법성

①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	
품 목	초등학교 신축공사	
신청금액	225,854,260원	중재비용: 4,222,198원
신청일	2003. 5. 7.	
판정일	2004. 4. 26.	
처리기간	355일	
판정금액	30,000,000원	

A는 수요기관인 B로부터 △△초등학교를 신축하는 공사를 4차까지 각 차수별 시설공사도급계약으로 총 공사부기금액 4,390,133,000원에 체결한 후, 이 사

건 공사를 발주 받았다. A는 1차 공사계약을 체결, 2001. 5. 30. 착공하여 같은 해 12. 31. 최초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착공일 현재의 공사용지 지반고가 설계도서상의 지반고 33m보다 높은 35m인 상태에서 B에게 공사용지 완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1차 공사기간 중 2개월간 동절기 물공사 중지기간으로 지정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편 2002. 9. 5. 제 3차 공사 준공시한이 도과되던 중, A는 1차 공사 및 3차 공사를 2002. 9. 25. 자로 실제 준공완료 하였다.

B는 이 사건 공사는 단일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므로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라고 판단하여 A가 제 1차 공사의 준공기일 87일 지체, 제 3차 공사의 준공기일 20일 지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1차 공사에 대하여 214,546,260원, 3차 공사에 대하여 11,308,000원)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A는 B의 용지제공의무불이행기간인 92일과 동절기 물공사 중지지시로 공사하지 못한 기간 60일을 포함하여 총 169일, 그리고 3차 공사 중 수업시간 중의 본건 학교 측 으로부터 공사중지요청으로 공사하지 못한 기간 13일 등의 범위 내에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는 절대공기 500일 하에서 3차 공사는 완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위 225,854,2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는 A가 공사착공 전 충분한 사전현장조사를 통해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고, 충분한 공기를 주었음에도 공사현장대리인의 잦은 교체 등 무책임한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의 용지제공의무불이행기간인 2001. 5. 30.부터 2001. 8. 30. 까지 92일간, B의 동절기물공사중지시도로 공사하지 못한 2001. 12. 29.부터 2002. 2. 22. 까지 60일, 약천우 내지 우천으로 공사 불가능한 27일 중 17일을 합한 169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인 A 역시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용지제공의무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의 이 사건 공사를 상당히 진행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준공기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체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B가 산정한 지체상금은 1, 3차 공사분에 대하여 도합 225,854,260원이 되는데 1, 3차분 공사대금은 도합 3,031,449,000원으로 지체상금이 위 공사대금의 7.45%로 과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3분의 1 이하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제반 진행 경위, 이 사건 초등학교가 개교한 시점, 수업 진행, 당사자 사이에 4차에 걸쳐 계약된 이 사건 공사에서 중복공사 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는 B의 입장이 이 사건 계약문서상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지체상금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결정하고, 그 감액의 정도는 부과된 지체상금 225,854,260원으로부터 30,000,000원 정도만이 감액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토막
상식

인생의 후견인

- 멘토

요즘 기업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바로 '멘토 제도, 멘토링'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조언자 '상담자' 후견인을 '멘토 (mentor)'라 하는데, 멘토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멘티 (mentee)' 혹은 '멘토리 (mentoree)', 멘토의 활동을 '멘토링 (mentoring)'이라 한다.

멘토(mentor)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다.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보살펴 달라고 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mentor)였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 역할, 선생님 역할, 상담자 역할, 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봐 주었다. 그 후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

용되었다.

오늘날 멘토링은 기업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멘토가 1대 1로 멘토리를 지도·코치·조언해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이 그것이다. 일종의 후견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 대학에서도 멘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어느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가 그 직업을 원하는 후배를 1대 1로 전담해서 지도하고 코치해 준다. 이렇게 멘토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 멘토 제도는 21세기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를 역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 이제 직장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의 인연도 책임제로 맺어야 하는, 그러니까 인연도 제도로 묶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일까.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